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인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8.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28”을 “129”로 하고, 일반직 계 “127”을 “12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1”을 “12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0”을 “41”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41”로 하며, 4급 이하 “40”을 “41”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128</u>	<u>129</u>	+1
·	·	·	
·	·	·	
일반직 계	<u>127</u>	<u>128</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1</u>	<u>122</u>	+1
·	·	·	

[별표 3]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0</u>	<u>41</u>	+1
일반직 계	<u>40</u>	<u>41</u>	+1
4급 이하	<u>40</u>	<u>41</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2